

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2] <개정 2012.1.31>

공기총실내사격장의 구조·설비 기준(제2조제2항 관련)

구분	구조·설비
사좌	1. 사격선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직선일 것 2.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을 것 3. 사대의 폭과 길이가 각각 80센티미터 이상일 것 4. 사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
사격실 내부	1. 사격실 내의 천장, 측벽 및 바닥은 사좌 전방 3미터까지는 두께 1밀리미터 이상, 사좌 전방 3미터 이상부터 탄알받이까지는 두께 0.7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2. 사격실 내의 천장, 측벽 및 바닥 등에 탄알이 튀어나갈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탄알이 튀지 못하도록 목재로 입힐 것 3. 사격 내에 창문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.
표적 및 거리	1. 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는 7미터 이상 10미터 이하일 것 2. 표적은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3. 표적테는 탄알이 튀어나갈 위험이 없게 되어 있을 것
탄알받이	1. 표적 후방에는 탄알받이가 있을 것 2. 탄알받이의 발사탄 집중부분은 두께 2밀리미터 이상, 그 밖의 부분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이와 같은 정도의 내탄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을 것 3. 표적 후면에 토사 등으로 된 방탄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설비를 갈음할 수 있다.
조명설비	1. 조명설비가 있을 것 2.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
그 밖의 사항	1.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2. 관람석은 사좌의 후방에 있을 것